

소비에트 초기 기록관리제도 형성과정 연구

- 칼라초프 개혁이론의 정책화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Early Soviet Archival System: With the Incarnation of the Kalachov's Archival Theories

주 은 성(Eun-Sung Joo)*

목 차

- | | |
|------------------------|---------------------|
| 1. 서론 | 3.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 형성과정 |
| 2. 19세기 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발전 | 3.1 중앙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
| 2.1 칼라초프 이전의 기록관리제도 | 3.2 중앙기록관리위원회의 변천과정 |
| 2.2 칼라초프 개혁이론의 특성 | 4. 결론 |
| 2.3 칼라초프개혁안의 정책화 | |

<초 록>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을 '제정러시아의 관련 이론과 제도의 영향'이라는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를 사회주의 체제의 독특한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기존의 다수설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19세기말 제정러시아시기의 관련 제도에서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원형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소비에트 초기 아키비스트인 마야코프스키의 주장과 같이 소비에트기록관리제도의 맹아를 제정러시아 말기 칼라초프에 의해 주도되었던 기록관리제도 혁신에서 찾는 시각에 주목하였다. 칼라초프는 제정러시아의 기록관리제도를 서구수준의 근대적인 성격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아키비스트이다.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는 국가책임의 중앙관리형 기록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19세기 서구제국의 '기록관리의 중앙집중화' 경향과 달리 칼라초프는 '기록물의 국유화 추진'과 '기록관리 및 보존의 완전한 국가재정지원화'를 표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소비에트 관련 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2에서 19세기 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발전과정 및 칼라초프의 개혁안과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본문3에서 칼라초프 개혁안과 소비에트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의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주제어: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 칼라초프, 칼라초프개혁이론, 글랍아르히브(Glavarkhiv)

<ABSTRAC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Early Soviet Archival System with a focus on the incarnation of the Tsar Russian System and Theories. Most of the western researchers take the uniqueness of the Soviet Archival System for granted and regard it as a Soviet Invention. However in this paper, researcher tries to find the archaic form of the Soviet system in the Kalachov's archival theories in the late 19th century. In the main body of this paper, researcher tries to reveal the whole feature of the Kalachov's theories, then, compares them with the Soviet System including 'Glavarkhiv.'

Keywords: soviet archival system, kalachov, kalachov archival theory, glavarkhiv

* 러시아 국립인문대학(Russian State University for Humanities in Moscow, RGGU) 기록학과 박사과정
(joeunsung@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7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1월 29일

1. 서론

소비에트체제는 인류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정치·사회체제 실험이었다. 비록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구소련의 부침(浮沈)과정은 현대 세계사의 흐름을 변화시켰고,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의 경제부흥을 주도하는 중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쿠바와 북한을 보면, 소비에트사회주의실험은 과거사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기도 하다.

소수의 특권자가 아닌 인민이 국가와 권력의 주체가 되고, 능력에 따라 근로하며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사회를 지향했던 소비에트체제는 제정러시아의 정치, 사회, 경제 체제의 혁명적 변화를 시도했다. 레닌이 주도한 소비에트 입법위원회¹⁾는 기록물관리 분야에서도 오웰의 이상사회(조지오웰 2003)를 떠올리게 하는 중앙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서구의 관련제도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다(Grimsted 1982, 431). 다수의 기존 연구자들은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특성을 새로운 실험과 독창적인 제도인 것으로 이해하였다(Grimsted 1993; 조호연 2004). 하지만, 19세기 제정러시아 기록관리제도와 관련된 러시아 아키비스트들의 이론을 검토하면, 소비에트식 제도가 소비에트 연구자들

의 독창적인 고민의 산물이라는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칼라초프²⁾를 비롯한 제정러시아 기록관리전문가들의 이론에서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주은성 2007). 소비에트 초기의 기록관리제도 형성에 참여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마야코프스키의 논저(Majakovskij 1920)에서도 소비에트 제도가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제정러시아의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정책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림스테드를 비롯한 서구 아키비스트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호르호르디나(2003)와 마야코프스키(1920)를 비롯한 러시아 연구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제정러시아에서 시작된 제도와 이론들이 1917혁명이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고, 기록관리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된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기존의 문헌자료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연구의 주된 방법론으로 삼았다. '본문 2'에서 19세기 말 제정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발전과정과 칼라초프의 개혁안들을 고찰하며, '본문 3'에서 칼라초프의 개혁안들이 소비에트의 중앙기록관리위원회(Glavarkhiv)로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성공 이후, 레닌의 혁명위원회에 소속된 입법위원회는 구제도에서 생산된 기록을 모두 다 국유화하고 중앙에서 집중 관리하는 법령들을 공포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이후 기존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기록관련 입법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소비에트집권 초기에 이와 유사한 법률적인 근거의 확보가 시도된 것이다. 일련의 법령들 가운데, 1918년 레닌 칙령(decree)은 소비에트 기록관리 제도의 미래를 제시한 초헌법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2) Nikolaj Vasilievich Kalachov(1819-1885): 제정러시아 말기의 법제도 연구자,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제정러시아 법무부 모스크바 기록관장 재임(1865-1885) 중 러시아 기록관리제도를 근대적인 형태로 혁신시킨 인물로 평가된다.

2. 19세기 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발전

2.1 칼라초프 이전의 기록관리제도

제정러시아 기록관리제도는 표트르대제의 개혁정책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성격을 확보해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러시아연방 국가기록원(GARF)에서도 러시아국가기록관리제도가 시작된 시점을 기록물관련 성문법이 공포되는 1712년으로 삼는 것을 감안하면, 표트르 대제 개혁법안의 성립 시기를 근대적 제도형성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러시아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 하겠다. 러시아연구자들은 기록관리제도의 발전과정을 표트르대제의 개혁정책 실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표트르 대제의 개혁 이후 19세기 말 칼라초프가 등장하기 전'과 '칼라초프의 개혁시기'로 나누어 접근하기도 한다(Majakovskij 1920, 47).

칼라초프 이전의 러시아 기록관리제도가 서구이론과 제도를 수용하며 정비된 것으로 보는데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19세기 말, 칼라초프의 이론과 정책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근대 기록관리제도의 틀이 마련되는 과정은 서구와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게 된다.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체제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 유럽의 근대 기록관리제도가 형성되었던 것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전제적인 차르³⁾체제가 유지된 가운데 기록관리제도의 근대성이 확보되어갔기

때문이다. 전제군주체하에서 기록물의 공공성과 역사성을 확인하고, 기록에 대한 사유화를 방지하며, 기록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민주적인 원칙을 선언한 칼라초프의 근대적인 기록관리제도 이론과 러시아 전역에 산재한 '기록관들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 집중관리기구의 구상'에서 기존 이론의 틀을 뛰어넘는 러시아식 근대기록관리제도의 토대 형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기록물들을 완전한 국가소유로 만들어 정부에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까지 책임져야한다는 부분은 기록관리의 근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에트식 기록관리체계까지 연상시킨다(Majakovskij 1920, 71).

러시아기록관리제도의 근대화를 칼라초프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업적으로 이해하거나 칼라초프의 위인적인 특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Majakovskij 1920, 78)이지만, 칼라초프의 개혁안이 성립되기 전까지 러시아내에서 자생적인 아키비스트들의 이론과 활동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칼라초프의 이론 역시 기존의 다양한 논의들의 연장선에 있으며, 다양한 연구자들의 아이디어가 집적되어 칼라초프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시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트르 대제의 기록물관 성문법이 제정된 이후 칼라초프가 등장하기 이전 러시아의 기록관리제도는 서구의 영향과 자체적인 방법론의 모색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체계화를 이루었다. 칼라초프 이론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9세기의 대표적인 연구자들과 그들의 활동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요

3) '차르(tsar)'는 제정러시아의 전제군주를 지칭하는 러시아말이다.

19세기 러시아 아키비스트들은 기록관의 분류·목록·평가·보존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을 실험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들은 대체로 바라노프의 형태와 카멘스키식의 형태 그리고 이바노프-로젠캄프식의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아키비스트들 가운데 블루도프는 사회주의적인 신념을 가진 좌파적인 기록관리자라는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바라노프는 비록 방법론상의 부족한 점은 있으나 기록물과 단행본 자료의 성격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도서관과 기록관의 분류-목록화작업의 차별성을 업무에 도입하였다. 즉, 자모순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분류가 기록물 생산과 관련된 정보와 기록물생산기관과 생산기록간의 맥락을 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기록물을 생산기관과 부처별로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기록관의 속성에 부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으며, 더 나아가 주제별 분류와 목록화는 생산기관별 문서분류와 보관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카멘스키식의 개혁은 유럽, 특히 독일식 기록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자모순의 분류를 기록관에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개혁에 의해 러시아의 기록관리제도가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진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한 기록관리제도를 낳지 못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예라고 하겠다. 기록관의 문서를 도서관의 단행본과 같이 분류하는 방법은 기록자료의 왜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바노프·로젠캄프식의 접근은 러시아 기록관리제도가 근대성 확보의 문턱에 이르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이바노프는 유럽식 분류법

에 의해 혼란스러워진 기록관 문서 분류체계를 바로 잡았다. 이바노프 이후 러시아의 기록관 리전문가들은 유럽의 제도에 대한 의존이 아닌 독자적인 방법론 개발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바노프는 기록관을 도서관과 분리하여 문서보존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류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록물에 대한 홍보와 기록물 색인을 위한 가이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록물 목록집 발간을 포함한 저술활동에 전념하였다. 로젠캄프는 기록관리학의 정립을 역설하였는데, 기록관리학이 고문서학이나 역사학과 차별성을 가지는 별개의 학문임을 강조하였다. 로젠캄프는 기록관리학이 별개의 학문이면서 응용학문, 즉, 학제간 학문임을 인식하고 역사학, 고문서학, 법학 등의 인접 학문을 연마한 전공자들이 기록의 수집-분류-평가 등의 업무를 익혀 전문적인 아키비스트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이론가들의 활동을 보면, 19세기를 전후로 하는 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발달은 서구의 제도 이식을 넘어서서 러시아 아키비스트들의 자생적인 연구 결과물들이 축적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칼라초프의 이론과 개혁적인 성향 역시 위와 같은 아키비스트들의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2.2 칼라초프 개혁이론의 특성

러시아 근대 기록관리제도의 이론적인 완성을 칼라초프⁹⁾의 기록관리제도 개혁안과 아키비스트의 활동에서 찾는 까닭은 그의 개혁안과 개혁안 실행과정 속에 근대성을 확보하는 대부분의 요소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칼라초프의

개혁안이 비록 제정러시아의 정책으로 모두 다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론의 측면만 놓고 보면, 칼라초프의 근대적인 기록관리제도는 '전국에 산재한 기록관들을 통합·운영하는 중앙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도입'하는 등 유럽의 선진적인 제도와의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19세기 서구시민사회의 수립과 함께 유럽 각국에서 기록물의 중앙관리체제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였던 것과 같이 19세기의 제정러시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칼라초프의 경우 기록관리제도와 관련한 2차 개혁 보고서에서 기록물의 중앙관리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모든 기록물의 국가소유 추진'과 '국가의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주도형 기록물 관리·보존 체제의 수립'을 주장하면서 서구의 점진적인 중앙관리화 방안과 대비되는 급진적인 중앙집중관리 정책을 제시하였다(Majakovskij 1920, 111-123).

이를 위해 칼라초프는 법무부 모스크바 기록관장으로 임명된 이후 정부부처에 다수의 공식 기록관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개별 기록관의 운영과 활용에서 일반대중에게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민주적인 요소를 도입하였다. 또한, 수도와 지방에 있는 공식 기록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고, 실제로 이 시스템을 지방에서 시험하기도 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기록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통합운영하는 체제를 개발하고 직접 실행에 옮긴 사례는 19세기말 서구의 기록관리제도발전사와 비교할 때도 선진적인 면모인 것으로 평가된다. 칼라초프식 기록관리제도 개혁이론과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다음의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 2> 칼라초프 개혁이론의 내용과 특성¹⁰⁾

항목	종래의 이해	칼라초프의 이해
기록물의 개념	- 국가의 공적인 목적을 위한 행정-사법-입법 행위로 생산된 문서	- 국가의 공적인 목적수행을 위한 문서 국가에 의해 수집, 평가, 보존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국가운영주체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가치 있는 기록
기록물의 수집·분류·목록작성	- 기록물 수집: 정부 부처에서 이관되는 문서들을 수집 - 이관된 문서의 내역 기록, 분류, 목록작성법 개발 필요성 제기	- 원칙적으로 정부 유관부처로부터의 이관을 통한 수집체계 확립 - 정해진 수집절차에 따른 기록물수집, 등록접수, 문서의 소실 방지 조치 - 목록작성은 문서의 생산부서별, 주제별, 생산일시와 등록접수 시기별 문서 목록집을 주기적 발행

9) Nikolaj Vasil'evich Kalachov(1819-1885), 1865-1885년 법무부 모스크바 기록관장(upravl'jajushchij Moskovskim Arkhivom Ministerstva Justitsii), 1864년 제정러시아 사법개혁제도준비위원(130여개의 민법개혁안 입안, 이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1868년 모스크바대학 법학원사학위 수여), 1848-1857년 모스크바대학 교수(러시아 법제사 강의).

10) T.I. Khorkhordina. 2003. *Rossijskaja Nauka ob Arkhivakh*, Moscow: Nauka. 참조.

11) 이는 기록물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잘못된 폐기결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신중한 처분과정을 강조하였다.

기록물 평가	- 문서의 평가는 국가의 지배세력과 문서생산 부서에서 산정한 가치에 따름	- 보존과 영구보존을 위한 평가-분류의 절차와 기술적인 원칙의 표준안 제정이 필요하며, 이 표준안을 러시아의 모든 기록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권고
기록물의 처분·보존	- 비현용문서의 폐기와 보존을 결정	- 문서의 특성에 따른 문서보존연한이 책정되며, 그 기한이 경과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폐기 혹은 영구보존을 결정 - 열개의 불필요한 기록물의 영구보존 결정이 나더라도 한 개의 필요한 문서가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한 처분 11)
기록물의 표준화	- 기록물의 표준화시도 부재	- 효과적인 기록관운용을 위해 기록물의 표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문서생산단계에서 정부차원의 서식, 문서작성방법의 통일과 규격화 - 범정부적인 표준(안)제정의 필요성인식
기록물의 역사성	- 현용문서의 정보가치 중시(효용성)	- 현용-비현용문서의 정보-증거 가치 중시(효용성과 역사성) - 기록물의 역사적-사회적-법률적 가치 중시(사회구성원의 법적인 권리를 확인할 근거) - 역사기록물로서의 고유기능 인정
기록물의 소유	- 기록물생산자, 관리자, 국가최고지도자와 권력집단이 소유가능	- 기록물은 전제군주(차르)나 정부, 개인의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자산'
기록물의 활용	- 전제군주와 생산자의 필요에 따른 활용, 개인적 활용 제한	- 기록의 활용은 기록을 필요로 하는 모두에게 허용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
기록물의 관리주체	- 전제군주의 위임을 받은 아키비스트 - 사학, 고문서학, 법학 등 인접분야 종사자	- 기록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 아키비스트 - 고고학대학/대학원을 설립하여 사학, 고문서학, 법학, 문헌학, 분류학, 조사-평가-목록작성업무 분야를 학습한 기록물관리 전문가 양성
기록관 운영주체	- 기록관은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되며, 관리들에 의해 운영	- 기록관은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하지만 전문아키비스트에 의해 운영 - 기록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 각 부분의 복합 지원 필요 • 정부와 사회: 제도적-재정적 토대구축, 기록관설립과 운용을 위한 기구와 시설 마련 • 개인: 기록관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해 개인차원에서 노력 • 아키비스트: 기록관 업무들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 재교육 체계적인 기록물의 '수집' - '평가' - '보존' - '활용' - '처분'의 계획을 세워 기록관 운영 - 기록관 기능의 개념에는 '1)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물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2)연구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자료제공' 포함
아키비스트의 전문성	- 기록관리, 분류 능력 필요 - 정책의 개발과 입안을 담당하는 고위직이 아닌 수렴된 정책을 수행하는 하위직 관리	- 기록관리, 분류 등 업무에 대한 지식, 역사-법학-고문서학과 같은 인접 학문에 대한 지식필요 - 업무수행의 결과가 현재뿐 아니라 미래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과 사명감 인식 필요 - 기록관의 민주적 활용과 역사적 책무의 수행을 위해 차원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의 인식 등이 전문성에 포함되어야 함 - 기록관리정책의 개발과 입안에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정책을 총괄하고, 업무수행에 독립성을 유지할 정도의 고위직책을 가져야한다고 주장.

위의 <표 2>를 보면, 칼라초프의 아이디어가 현대 기록관리학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기록관리에서 인적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키비스트 양성 대학¹²⁾을 직접 설립하였고, 이 대학에서 양성한 전문가를 제정러시아의 기록관 관리로 채용하였다. 또한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이 단순하게 업무적인 지식과 인접 학문분야의 전문성 확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문서를 다루는 입장에서 윤리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기록관의 근대화를 위해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아키비스트의 역할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역설하는 것도 기록관리업무의 특성을 잘 파악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칼라초프는 ‘기록물을 정의’하고, ‘기록관의 기능과 목적’을 구체화하였으며,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아키비스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시도하였다. 특히 기록관설립 목적이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기록물을 수집·보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은 절대군주 통치하에서 쉽지 않은 표현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기록관의 주인이 전제군주가 아닌 러시아 국가 전체라고 하는 칼라초프의 소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칼라초프는 ‘과거와 현재에 관한 가치 있는 기록물이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러시아인들 모두의 자산’이라고 정의하였다(Khorkhordina 2003, 163). 공공의 자산을 관리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기록관리제도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주장은 칼라초프시대에 이미 러시

아 기록관리제도 이론이 상당부분 근대적으로 변혁되었음을 드러낸다. 19세기말 러시아는 기록관리제도의 측면에서 민주화·근대화되었고, 기록물의 역사성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등 근대성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3 칼라초프 개혁안의 정책화

칼라초프는 1865년 법무부 모스크바 기록관장직에 취임하여 기록관의 현황을 조사한 뒤 다음과 같은 업무방향을 확정하였다.

- (1) 기록철 관리업무상 무질서로부터의 질서 회복.
- (2) 체계적인 기록물의 목록작성.
- (3) 개별기록관 단위가 아닌 국가차원의 기록관 정비(Khorkhordina 2003, 164-166).¹³⁾

위와 같이 설정된 업무방향에 따라 칼라초프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의 운영을 바로잡고 조직 개편을 위해 러시아 아키비스트들의 이론들만으로는 충분한 논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Khorkhordina 2003, 167). 이에 따라 18-19세기에 성립하는 러시아의 자생적인 기록관리 이론을 토대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서구제도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러시아 실정에 적용 가능한 선진적인 아이디어들을 담은 ‘칼라초프 1차 보고서’가 작성되었다(Khorkhordina 2003, 168).¹⁴⁾ 칼라초프의 첫번째 개혁안은 1869년 고

12) 칼라초프는 1876년 러시아 최초의 기록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고고학 대학’을 설립하였다.

13) 호르호르디나는 제1차 제2차 고고학세미나 프로시딩을 참조하여 칼라초프 제안서의 성격을 요약하였다. ‘Vestnik arkhologii I istorii, SPb., 1886. Byp. 5.’ 참조.

고학 세미나에서 발표되지만, 정부관계자나 관련 연구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첫 개혁안이 좌초한 까닭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1869년 당시의 개혁안이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시안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차 보고서에 대한 미온적인 반향을 개선하기 위해 칼라초프는 2차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2차 보고서에는 서구 제도모방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실정에 맞는 고유한 이론들을 개발하고 체계화하였다. '기록관의 국가차원에서의 의미, 인적구성, 시설과 설비, 전국에 산재한 기록관들의 중앙집중관리방안'과 '모든 기록물의 완전한 국

가 소유와 국가재정의 투입에 의한 보존과 활용' 등의 내용을 보강한 2차 보고서는 1871년 고고학 세미나에서 발표되면서 관련 연구자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고고학세미나 참석자들의 공동 발의 형태로 대정부 정책 제안서로 채택되었다. 1871년 보고서가 세미나 참여자들의 공식적인 정책건의안으로 받아들여진 이후, 보고서 내용을 정책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1875년 2월 27일 '러시아 기록관 개혁을 위한 범정부 위원회(MKUA)¹⁵⁾'가 발족되었다. 제정러시아 각료위원회 산하의 한시적인 기구인 MKUA는 당시의 러시아 기록관들을 다음의 <표 3>과 같은 형태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였다.¹⁶⁾

<표 3>의 권고안 내용 가운데 '기록학 대학설립과 전문적인 아키비스트 양성의 필요성', '중

<표 3> 기록관개혁범정부위원회(MKUA)의 권고사항

기존 기록관리체계	MKUA의 권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에 따라 설립된 기록관들이 업무의 유기적인 연관성 없이 개별적으로 존재 - 기록물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기록물을 보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처분의 매뉴얼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 중앙에서 관리-통제하는 특별기구 설립(GAK¹⁷⁾) 제안 - 기록물들을 보존연한에 따라 합리적인 보존체계 수립 권고, - 모든 기록관들을 '장관급중앙부처기록관'과 '지역별기록관'으로 구분 - 지역별기록관을 지역의 중앙 역사기록관과 지역기록관들로 분류 - 개별기관에서의 보존연한이 지난 기록물들 가운데 영구보존결정이 내려진 기록물들의 경우 모두 장관급 중앙부처기록관이나 지역의 중앙 역사기록관에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권고. - 모든 기록들의 완전한 국유화 준비와 국가재정 투입에 의한 보존과 활용

14) '아카이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Arkhivy o neobkhodimosti arkhivnykh reform"라는 논문에서 칼라초프는 다음과 같이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죽어버린 문서더미의 미로를 풍부한 지식의 보고로 전환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기록관의 자료들을 탐구하여 자신들의 연구와 상상력에 피와 살을 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칼라초프는 "...19세기 서유럽의 기록관리제도가 이상적인 형태가 아니었으며, 러시아의 자생적인 이론들과 아키비스트의 활동들을 기초로 하여 서유럽의 선진적인 제도를 접목시키는 것이 근대기록관리제도를 형성하는 요건이라고 생각했다..." *Trudy Moskovskogo Arkheologicheskogo obshch.estva*, M., 1865, pp.2-3. *Trudy I Arkheologicheskogo s'ezda*, SRb., 1881, T.1, p.XI.

15) 기록관개혁을 위한 범정부 위원회의 러시아어 정식 명칭은 'Mezhvedomstvennoj Komissii ob Ustrojstve Arkhivov'이다.

16) 이와 관련해서 제2차 고고학 세미나 프로시딩인 '*Trudy II Arkheologicheskogo s'ezda*, SPb., 1881, Byp. 2, p.XI.' 참조.

양기록관리위원회의 지방조직 구성'과 같은 혁신적인 개혁안들은 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성격을 바꾸는 핵심적인 제안이다. 기록학을 역사학이나 제도사의 하위 연구단위로 간주하지 않고 개별적인 학문 대상으로 인식하고, 아카이브 전문 연구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록관 운영과 기록관리제도의 체계화를 위해서도 전문 아키비스트의 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보면 칼라초프는 '기록학'과 '기록관리제도'의 운용에서 인적 요소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러시아 최초의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록업무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양질의 인적 자원 확보라고 판단하고, 대학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정부로부터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1876년 자신이 살던 집을 개조하여 '기록학 대학(Arkheologicheskij Institut)'¹⁸⁾을 설립하고, 스스로 초대 총장에 취임했다. 대학의 설립취지는 유럽 아키비스트의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러시아 아키비스트의 양성이었다(Kalachov 1869, 37-55).¹⁹⁾ 기록관리전문가의 교육과정에서 문서의 분류와 목록작성과 같은 기술적인 능력보다 기록의 수집과 분류, 평가와 처분 등 기록관리 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안목과 전문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이 더 중

요했고, 기록학대학은 이를 위해 고문서학, 역사학, 고고학과 같은 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정하였다.²⁰⁾

3.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 형성과정 - 칼라초프 이론의 소비에트식 실험과정

다수의 서구 연구자들은 소비에트의 기록관리제도에 소비에트식 고안 혹은 창작이라는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정러시아에게서 물려받은 기록들과 기록관 시설들은 당연히 존재하는 유물과 유구의 형태 정도인 것으로 이해하고, 제정러시아에서 물려받은 이와 같은 과거의 역사적인 유산과 소비에트 체제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유통을 위해서 마련한 정책과 제도의 창의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것이 기존의 시각이라 하겠다. 하지만, 본문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라초프로 대변되는 19세기 말의 제정러시아 국가기록관리제도와 이론은 소비에트라는 시간과 공간을 만나서 보다 완전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7) GAK는 국가기록위원회를 뜻하는 Gosudarstvennaja Arkhivnaja Kommissija의 약어이다.

18) 러시아어 원문을 직역하면 '고고학 연구소'라고 표기해야한다. 하지만, 대학의 설립취지가 고고학연구가 아닌 기록관리학연구이고 교육과정이 기록전문가 양성으로 이루어져있음을 감안해서 연구자가 임의로 '기록학대학'으로 번역하였다.

19) 칼라초프는 고고학대학에서 양성해야하는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의 수준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조국에서도 서구에서 내가 보았던 그 수준의 아키비스트들을 배출하여야한다. ...v nashem otechestve obrazobalos' soslovie takhikh arkhivistov, kakikh mne udalos' videt' na Zapade...'

20) '칼라초프는 유럽지역의 아키비스트 양성 관련 교육제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직접 유럽방문연구에 나섰다. 벨기에, 홀란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기록관과 기록관종사자들의 교육내용을 확인한 뒤 파리에 있는 Khartij School을 모델로 기록관리전문교육기관인 고고학대학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Vestnik arkheologicheskij I istorii, 1886, Byp. 5. 참조.

3.1 중앙기록관리위원회(Glavarkhiv)의 설치

본문 2에서 살펴본 칼라초프의 개혁안들 가운데 '중앙기록관리위원회(GAK)'와 '지역별 기록관리위원회(GUAK)'의 설치안²¹⁾은 '기록의 보존과 관리'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장'시켜온 19세기 서구의 관련제도²²⁾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한 러시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Majakovskij 1920). 칼라초프는 기록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해가던 서구제도에서 앞서나가서 '모든 기록물의 국가 소유화'를 추진하고, '국가재정에 의한 모든 기록물의 관리·보존 정책의 추진'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흔히 칼라초프 위원회라고 알려진 '중앙기록관리위원회(GAK)'는 1878년 제정러시아정부 교육부(Ministerstvo narodnogo prosveshchenija) 산하기관으로 처음으로 설치되었지만, 제정러시아 말까지 문서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 제정러시아 사회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들과 역사기록물들의 국가소유화를 추진한 칼라초프에 대한 대토지 귀족들의 반대가 심했고, 차르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칼라초프가 시도한 '모든 기록물의 국가소유·관리·보존'을 내세운 기록관리제도는 유명무실한 실험으로 남게 되었다.

차르정부의 재정지원 결여로 인해 효율적인 정책이 되지 못했던 칼라초프의 '중앙기록관리위원회'가 소비에트 정권의 수립과 함께 글랍 아르히브의 원형의 구실을 하게 된 것을 보면 소비에트의 기록관리제도가 칼라초프 이론의 계승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에트 제도 정착시기인 1920년대의 대표적 소비에트 아키비스트인 마야코프스키는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근간이 칼라초프의 '중앙기록관리위원회'와 '지역별기록관리위원회'의 경험에서 비롯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마야코프스키는 소비에트사회와 제정러시아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칼라초프의 주된 개혁대상을 '차르가 주인행세를 하며 선심 쓰듯 백성들에게 기록의 일부분을 보여주던 행태'로 규정하고,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핵심을 '소비에트에 속한 모든 인민들의 집단적 기록소유와 자유로운 기록활용을 위한 전향적 제도 창출을 위한 중앙집중관리제도의 확립'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Majakovskij 1920).

하지만,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를 전적으로 칼라초프이론의 실현 혹은 정책화인 것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1789년의 대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시도된 기록관리제도개혁 움직임은 비롯한 서구 기록관리제도의 개혁 방향이 '기록물의 국가소유', '기록관리의 국가재정사업화' 경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소비에

21) Glavnaja Arkhivnaja Komissija, 1878년 교육부(Ministerstvo narodnogo prosveshchenija) 산하에 처음으로 중앙기록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칼라초프 위원회라고 알려진 혁신적인 조직은 제정러시아 말기까지 문서상 형식적으로 존재했을 뿐 실제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칼라초프가 GAK를 구상하면서 러시아 영토 내의 모든 기록관들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고, 영구보존을 위한 중요문서들을 단일한 중앙의 기록관에서 보존하는 체제를 만들고자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강력한 정부의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어 칼라초프의 개혁안은 결국 제정러시아시기에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다.

22)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기록관리제도상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모습은 '국가기록원, 2005,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현황』, 대전: 국가기록원'을 참고.

트 체제가 보여준 '기록관리의 중앙집중화'를 칼라초프 이론의 연장선상에서만 고찰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볼셰비키 혁명 초기의 내전과정을 겪으며 소비에트정권과 서구열강 사이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소비에트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정책들이 소비에트 체제 내의 인적·지적 자산을 활용하여 구상되고 실천되었음을 감안하면 소비에트 초기 기록관리자들이 서구식의 '기록관리의 중앙집중화'가 아닌 '칼라초프식의 중앙집중적인 기록관리제도'를 소비에트 체제 이상의 실현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수용하였다는 마야코프스키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히 보인다. 또한 칼라초프식의 '모든 기록자료의 완전국유화 지향', '중앙통제관리화 추진'은 19세기 서구 기록관리제도에 비해서도 더 급진적인 아이디어이며, 칼라초프에서 맹아를 찾아볼 수 있는 '기록물의 국유화정책'은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1920년대 말에 준비되고 3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생산수단과 생산요소의 공유화정책과도 같은 맥락을 보인다.

칼라초프는 중앙기록관리위원회(GAK)를 구상하면서 러시아 영토 내의 모든 기록관들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고, 영구보존을 위한 중요문서들을 단일한 중앙의 기록관에서 보존하는 체제를 만들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없어 개혁안이 결국 제대로 실현될 수가 없었다.²³⁾ 하지만, 1917년 혁명 이후 소비에트혁명정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면서 칼라초프의 중앙기록관리위원회(GAK)는 소비에트연방체제하에서 글랍아르히브(Glavarkhiv)의 형태로 부활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핵심인 글랍아르히브와 칼라초프의 GAK를 비교해보면 소비에트연방의 기록관리제도가 하늘에서 떨어진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제정러시아에서 수립된 근대적인 이론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Majakovskij 1948, 161-181).

러시아 내의 모든 기록관들을 중앙부처기록관과 지방기록관으로 나누고, 이들 기록관에 분산·보관되는 문서들 가운데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비현용문서들을 중앙에 설립된 국립기록관에 이관하여 통합관리하려는 칼라초프의 희망은 제정러시아시기에는 실현되지 않았다. 기록관의 중앙관리-통제체제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칼라초프는 지방 소재 기록관들부터 개혁하기로 하고 개별 지역단위로 '지역별 중앙관리위원회(GUAK)'을 설립하였다. 라잔(Rjazan), 탐보프(Tambov), 오를로프(Orlov), 트베리(Tver) 지역에 1885년 GUAK이 설치되었을 뿐이었다.

'지역별중앙관리위원회(GUAK)'는 지역 기록관 소장 기록물들의 평가, 분류, 보존, 폐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중앙기록관리위원회(GAK)'가 실패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역별중앙관리위원회는 설치 지역이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노출하였지만, 지역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지역 소재 기록물들의 보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던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Khorkhordina 2003, 168).

23) *Sbornik materialov, odnosjashikhsja do arkhivnoj chasti v Rossii*, Pg., 1917. T.1, 379 참조.

칼라초프의 개혁안은 비록 제정러시아시대에 모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기록관리 제도가 19세기말에 이미 서구수준의 근대성에 이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서구수준을 넘어서서 오늘날의 기록관리제도의 특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칼라초프의 개혁안은 제정러시아의 기록관리제도의 근대성 완성에서 첫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그의 개혁안이 소비에트 기록관리체제의 근간이 되었고, 나아가서 러시아연방 기록관리제도 개혁의 지향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 형성과정을 글랍 아르히브의 정착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 발달사를 글랍 아르히브의 원형인 칼라초프의 ‘중앙기록관리위원회’와 ‘지

역별중앙관리위원회’가 소비에트 체제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정책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3.2 중앙기록관리위원회의 변천과정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 형성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다음도표가 매우 유용하다.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에트의 관련 제도는 글랍 아르히브의 기능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Dolgikh 1980, 4-17).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성격을 드러내는 글랍 아르히브가 바로 칼라초프에 의해 시도되었던 GAK와 GUAK의 정교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에트 체제가 보여주었던 특유의 전제성과 전체주의는 러시아 고유의 철학인 미르(mir)²⁵와 같은 집단적 성향을 드러내는 전

<표 4> 소비에트 연방 중앙기록관리위원회(Glavarkhiv)의 변천과정(조호연 2003, 348)²⁴

연도	중앙기록관리위원회의 명칭
1918년-1922년	Glavarkhiv RSFSR(러시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 교육부 산하)
1922년-1929년	Tsentrarkhiv(Glavarkhiv RSFSR의 행정기능이 러시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중앙기록관리위원회’로 이관)
1929년-1938년	Tsau RSFSR(러시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1929년-1938년	Tsau SSSR(소비에트연방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1938년-1948년	Tsau NKVD SSSR(소비에트연방 내무부 산하)
1948년-1960년	Gau MVD SSSR(소비에트연방 내무부 산하)
1960년-1991년	Gau pri SM SSSR(소비에트연방 각료회의 산하)
1955년-1990년	Gau pri SM RSFSR(러시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각료회의 산하)

24) 위 도표는 20세기 러시아 기록관리제도사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만, 러시아사회주의 연방공화국과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 관련제도 변화가 구분 없이 혼재되어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표에서는 조호연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도표내용의 분리를 시도하였다. 위의 표는 러시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서의 기록관리위원회의 변천과정과 소비에트연방에서의 중앙기록관리위원회의 변천과정을 서로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다.

25) ‘미르(mir)’는 공동체, 세계를 지칭하는 러시아어 단어이며, 사회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러시아 전통 공동체 사상이자 제도이다.

통제도들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스이로프 1998).²⁶⁾ 따라서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시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이해과정일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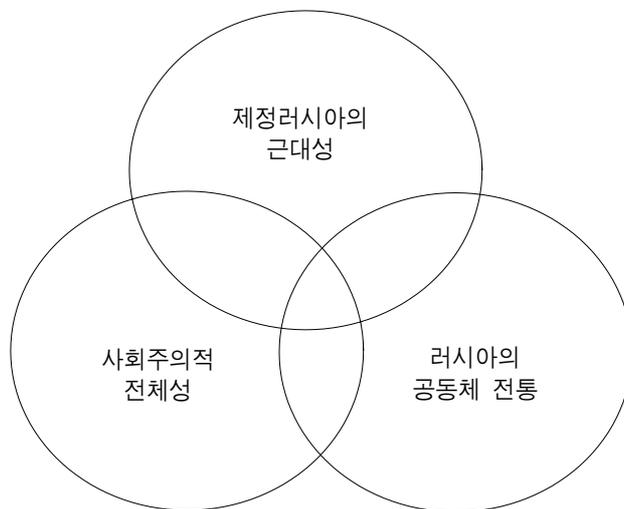
역사적으로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형성에 기여한 주요한 요소들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해볼 수 있다.

위의 <그림 1>은 소비에트연방 기록관리제도의 유산과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소비에트의 기록관리체제를 기존의 기록관리체제와 다른 새로운 형태로 평가했지만, 실상은 칼라초프 이론을 비롯한 제정러시아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에트체제가 제정러시아의 극복과 계승이라는 시각은 기록관리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

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기록관리제도와 관련해서 보면, 소비에트는 제정러시아의 기록관과 기록문서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일종의 상속자가 된 셈이다. 하지만, 그림스테드를 비롯한 다수의 서구 연구자들은 소비에트가 제정러시아에서 물려받은 유산을 하드웨어에 국한하는 경향을 보인다(조호연 2004, 23-39, 그림스테드 1993).

소비에트연방이 제정러시아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단순하게 기록물들에만 국한되지 않는 데도, 소비에트 체제의 낯선 모습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점이 부각되지 않는지도 모른다. 연구자는 『국가기록연구』 19호에 게재한 줄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을 '글라브아르히브(Glavarkhiv)'로 불리는 중앙집중관리형태의 완성



<그림 1> 소비에트연방 기록관리제도의 특성

26) 스이로프는 '미르공동체, 대지주의(大地主義)와 같은 공동체적 사고나 전체적인 사고를 러시아인의 전통철학이나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과정으로 평가한 바가 있다(주은성 2006, 47).²⁷⁾

소비에트연방의 기록관리 정책이 혁신적이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19세기 말의 제정러시아의 상황을 연구하면, 소비에트 체제가 새로운 면모라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소비에트의 기록관리제도는 기록물이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제정러시아가 이룩했던 기록관리제도의 근대성까지 고스란히 제정러시아의 기록관들에게서 물려받았다.

위의 <표 4>에 드러나는 기록물관련 기관의 변화추이를 보면, 특히 기록물의 중앙집중관리 체계에서 유럽제국들의 관련제도와 비교해서도 더 급진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제정러시아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GAK)가 소비에트 체제의 핵심으로 정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칼라초프가 효율적인 기록관운영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구상하고 실현에 옮겼던 '기록관들에 대한 중앙통제-관리시스템'이 소비에트체제에서 구체화되고, 심화되어 마침내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 근대성의 새로운 얼굴'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소비에트 체제하의 기록관리제도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연방관리 기록관들

을 중심으로 15개 소비에트 연방 구성공화국들의 기록관들을 수직적인 네트워크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에트 연방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록관들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설치하고, 15개의 개별 공화국의 수도와 지방 주요 거점 도시에 개별공화국 차원의 기록관을 설치 운영하였다. 러시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RSFSR)의 경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연방 소유의 연방 기록관들과 러시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핵심 기록관을 위치시키고, 톰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은 주요 도시에 기록관의 분소를 설치하였다. 수도와 지방에 산재한 2,000여개가 넘는 방대한 기록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의 모든 기록관들을 하나의 운영 통제 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소비에트 기록관리체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비에트연방 기록관리제도는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 이후, 국가의 중요 기록물의 국외유출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918년 혁명정부가 기록관리에 대한 임시법인 소위 '레닌 포고문'을 공포하면서 정책화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에 있는 모든 기록물의 국유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레닌 포고문'²⁸⁾(Grimsted

27) 주은성은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우회적으로 설명하였다. "엄격한 국가 통제 하에 놓여있었던 구소련의 기록관리 체제는 마치 외계의 별에서 지구로 우연히 날아 들어온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서방에는 낯설고 독특한 존재였다. 마치 헉슬리의 『놀라운 신세계』(the Brave New World)나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유토피아적인 가상공간이 실제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비에트 기록관리체제의 토대가 마련되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비에트 기록관리정책을 살펴보면 소비에트 연방체제의 뿌리가 제정러시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에트 연방의 문서보관과 관리체계를 정권에 봉사하는 하부기구로 만들고 정보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핵심적인 도구는 글랴아르히브(Glavarkhiv)라고 불렀던 통제기구였다. 이 기구는 '구소련 각료회의 산하 기록관련 최고 행정위원회'로 소연방의 핵심적인 기록관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글랴아르히브는 아키비스트들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을 띤 회의체였고, 역사를 소비에트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작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기구이기도 하였다..."

28) Grimsted는 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성격을 레닌 포고문에 나타나는 '모든 기록물의 국유화 조

1982, 429-443)은 소비에트연방 정권의 기록관리제도의 성격과 근간을 드러내는 분명한 자료로 보인다.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지는 기록관리제도 개혁과 관련된 법령들은 '1918년의 기록물 국유화선언'을 이행하는 효과적인 기구를 만들고 그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을 반영하였다.

소비에트 연방 기록관리제도 정비의 역사는 중앙통제기구의 성격을 가진 소비에트기록관리위원회인 글랍아르히브를 태동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소비에트 영역 내의 모든 기록관들과 기록관리업무를 일체화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Khorkhordina 2003, 177-195).

4. 결론

소비에트식 기록관리제도의 맹아를 19세기 말 칼라초프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제정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혁신방안'에서 찾아보았다. 인류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하게 '기록관리의 중앙집중화' 경향을 보였던 소비에트의 기록관리제도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독창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제정러시아에서 시작된 다양한 개혁시도들의 정책화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생산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음을 마야코프스키와 호르호르디나 등과 같은 러시아연구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았다.

제정러시아에서 상당한 부분 진전을 보았던 근대적인 기록관리제도 정착과 칼라초프식의 중앙집중관리시스템 그리고 러시아 전통의 '미르(mir)²⁹⁾와 같은 집단이식이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성립에 기여한 점³⁰⁾은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요소가 소비에트 기록제도를 형성한 충분조건이라고 설명하는 시각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에트제도에에는 본문에서 지적 하였던 요소들이 반영되어있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요소가 부가되어있고, 서구의 선진적인 제도들이 제한적으로 접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에트 제도의 성격을 차르시대의 제정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만 살펴보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 논증했던 '칼라초프식 개혁안이 소비에트 사회에서 부활하여 정책화되었다'는 논리 역시 일정부분에서 그와 같은 성격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다양한 성격을 조망하는 하나의 시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른 접근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의 의미는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를 소비에트 고유의 제도나 혁신의 산물'로 간주하거나 소비에트가 제정러시아를 계승한 부분을 '기록물과 기록관의 계승과 같은 하드웨어에 한정하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더 다양한 시각에서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에 있다.

치'와 '모든 기록물 관리의 중앙집중적 방식'에서 찾고 있다.

29) '미르(mir)'는 러시아말로 평화, 세계, 집단을 뜻하는 단어이다.

30) 소비에트 초기 기록관리제도의 성격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들을 <그림 1>에서 삼각형의 형태로 설명하였다.

참 고 문 헌

- 스이로프, S. H. 1988. 『러시아의 역사』. 기연수 옮김. 서울: 동아일보사.
- 오웰, 조지. 2003. 『1984』. 정희성 옮김. 서울: 민음사.
- 조호연. 2004.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와 그 변화.” 『기록학연구』, 10: 324-369.
- 조호연. 2004. “러시아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련의 기록관리제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2): 23-39.
- 주은성. 2006. “러시아연방 국가기록 관리체계의 변화상 연구.” 『국가기록연구』, 19: 25-53.
- Baranov, P.I. 1878. *Arkhiv ravitel'stvyjushchego Senata, V 3t., 1872-1878, T.1*. Saint-Petersburg: Arkhiv.
- Dolgikh, F.I., Rudel'son, K.I. 1980. *Teorija I praktika arkhivnogo dela v SSSR*. Moscow: Nauka.
- Grimsted, P.K. 1993. “Russian Archives in Transition.” *American Archivist*, 56: 1-17.
- Grimsted, P.K. 1982. “Lenin's Archival Decree of 1918”, *American Archivist*. 45: 429-443.
- Khorkhordina, T.I. 2003. *Rossijskaja Nauka ob Arkhivakh*, Moscow: Nauka.
- Kalachov, N.V. 1869. *Arkhivy, ikh gosudarstvennoe znachenie, sostav I ustrojstvo*, Moscow: Nauka.
- Majakovskij, I.L. 1920. *Istoricheskij Ocherk Arkhivnogo Dela v Rossii*, Peterburg: Sovetskij Arkhiv.
- Majakoskij, I.L. 1948. “Kalachov kak istorik-arkhivist”, *Trudy MGIAI*. Peterburg: Sovetskij Arkhiv.
- Rozenkampf, G.A. 1821. “Plan o privedenii v luchshee ustrojstvo arkhivov voobshche”, *Trudy Komissii sostavlenija Zakonov, 2-e izd.* Saint-Petersburg: Arkhiv.
- Shokhin, L.I. 1999. *Moskovskij arkhiv Ministerstva justitsii I russkaja istoricheskaja nauka*, Moscow: Russkij Arkhiv.

[고문헌자료]

- Sbornik materialov, odnosjashikhsja do arkhivnoj chasti v Rossii T.1*, 1917. Peterburg: Progress.
- Trudy II Arkheologicheskogo s'ezda*, SPb., 1881. Byp. 2.
- Trudy I Arkheologicheskogo s'ezda*, SRb., 1881. T.1.
- Trudy Moskovskogo Arkheologicheskogo obshchestva*. 1865. Moscow.
- Vestnik arkheologicheskij I istorii*. 1886. Byp. 5.